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金炳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39

발의연월일: 2020. 1. 4.

발 의 자: 金炳旭・김영식・허은아

서병수・태영호・배준영

최춘식 • 이주화 • 곽상도

김석기 · 김성원 · 서일준

임이자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초·중등교육법, 유아교육법, 의료법 등을 보면 교사, 의료인 등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의 결격사유에 마약·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시키고 있으나 교육 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빠져 있음.

이에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·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으로써 타 입법례와 형평을 맞추고자 함(안 제10조의4제4호 신 설). 법률 제 호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의4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4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제10조의4(결격사유) 다음 각 호 | 제10조의4(결격사유) |
|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 |
| 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| |
| 없다. | |
| 1. ~ 3. (생 략)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|
| <u> <신 설></u> | 4. 마약・대마 또는 향정신성의 |
| | <u>약품 중독자</u> |